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배현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212

발의연월일: 2020. 6. 30.

발 의 자:배현진·김형동·김예지

윤두현 • 권명호 • 김희곤

안병길 · 김기현 · 홍준표

신원식 · 최승재 · 전주혜

주호영 • 유상범 • 서일준

이종성 • 정경희 • 황보승희

김성원 · 정희용 · 최형두

김 웅・조수진・金炳旭

조태용 • 이양수 • 김정재

의원(2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부를 감사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헌법기관임.

하지만 최근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 있어 부처 장관 출신들이 해당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그동안 국회가 지켜왔던 관례들이 깨지며 헌법에 명시된 삼권 분립의 원칙이 흔들리고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사·견제 역할 또한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.

이에 상임위원장 후보로 지목된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으로 선

출될 수 없도록 함(안 제41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1조의2(상임위원장의 제척) 상임위원장 후보로 지목된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41조의2(상임위원장의 제척) 상
	임위원장 후보로 지목된 의원
	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
	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
	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
	<u>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.</u>